
유연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가능한지

1 질의

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 (연고자 존재) 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가능한지?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토지보상법” 이라 함)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(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)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토지보상법 제51 조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(제1호) , 손실보상 (제2호) ,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(제3호,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(제4호) 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분묘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(법 제40조 참조)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,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면 수용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,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

[2017.11.17. 토지정책과-7328]